

##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8. 22.(수) 09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○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4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, 제43차·제44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-1.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

○ 2012년 제42차 회의의 속기록을 개인별 득표수 및 탈락자 등을 음영처리 후 열람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함

## ⑥ 의결사항

### 가.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- (2012-46-183)

-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, 법률 부칙 제7조에 의거, (주)미디어크리에이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의결함
- 허가조건
  - 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성, 공정성,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- (1) 방송광고판매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, 제작,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    - (2) 방송광고판매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
    - (3) 방송광고 판매시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PP와 그러하지 아니한 PP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
    - (4)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다른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비교하여 특정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 이외의 광고판매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
  - ②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내용 및 SBS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, (주)미디어크리에이트간 체결한 네트워크 광고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③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  - (1) 결합판매 이외의 광고판매를 성실히 지원하여 기존 수준으로 광고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미달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- (2)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 이외의 광고판매에 관한 별도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, 매년 3월 말일까지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  - (3)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담당하는 지역지사 설립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'12.10.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
- ④ ‘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’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행정예고(‘12.7.6)된 고시안을 기준으로 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⑤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, 매년 3월 말일까지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, 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
## 6. 폐 회 (10:05)